

제 193 회 임 시 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6.25)

거창사과 · 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옥]

#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6.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6. 13.

### 2. 제안 이유

- 거창사과·딸기는 거창군 농업소득의 32.9%, 10.34%를 각각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며, 사과·딸기 주산단지로서 우수한 재배 환경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음 또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거창사과테마파크, 경남사과이용연구소, 딸기체험농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FTA발효 후 수입과일의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등 농업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 발전하여 거창사과·딸기 명품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이러한 취지로 특구지정 계획(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3. 근거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특구지정 계획(안) 주요 내용

(1) 특구의 명칭 : 거창 사과 · 딸기 산업 특구

(2) 특구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의 외 8,014필지

(3) 특구의 면적 : 15,778,213m<sup>2</sup>(1,577.82 ha)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중심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경상남도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남 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

나. 특구지정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산업화 추진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FTA를 적극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함

(5) 특화사업계획

가. 고품질 생산체계구축 (고품질생산단지확충 등 7개 사업)

나. 가공분야활성화 (사과생과일주스 연구, 생산지원 등 2개사업)

다. 유통기반구축 (산지유통센터운영 등 3개사업)

라. 명품브랜드 육성 (사과이용연구소운영 등 7개사업)

마. 명소 마케팅추진 (거창사과테마파크 운영 등 5개사업)

(6)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7) 특구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8)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2조)

- 거창스포츠파크 및 사화마라톤대회코스 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제한 조치 요청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 종류, 모양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6조)

- 사과. 딸기 재배시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를 할 수 있는 특례인정

라. 도로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3조)

- 특구지역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을 일시적으로 허용

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5)

- 거창 사과·딸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우선 심사

바.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 가공식품 등 사과와 관련된 특허신청에 대한 우선심사

사.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43조)

- 사과·딸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시 식품의 표시기준을 준수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

(9)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51,841백만원

나. 조달방법 : 국비 4,709(9.08%) 도비 8,806(16.99%) 군비 28,846(55.64%)  
민자 9,480(18.29%)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방안 : 해당 없음

(1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13 ~ 2017년(5년간)

## 5. 기타 참고사항

### (1) 주민의견 청취

- 특구지정 계획(안) 공고 : 2013. 6. 4. ~ 6. 24.
- 주민열람 실시 : 2013. 6. 11. ~ 6. 24.
- 주민공청회 실시 : 2013. 6. 17. / 산지거점유통센터(APC) 회의실

### (2) 추진상황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13. 3. 8.
  - 업체 : (재) 산업경제발전연구원(경북소재)
  - 기간 : 2013. 3. 11. ~ 10. 7.
  - 계약금액 : 29,451,000원
-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업무협약 : 2013. 3. ~ 4월
  - 용역업체, 중기청담당자, 농업기술센터담당자 등 (2회)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면적조사 : 2013. 3. 28. ~ 4. 5.
-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 컨설팅 및 협의 : 2013. 3 ~ 6
  - 지역특화규제개선과, 기술센터, 용역업체, 지역특화참여희망업체
  - 지침컨설팅, 초안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검토, 특화사업자 공고 검토
  - 지역특화사업 내용 검토 등 (5회)
- 지역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 2013. 6. 4. ~ 24.(20일간)
- 주민공청회 개최 : 2013. 6. 17.(월) 14:00 / APC 2층 회의실

### (4) 향후 일정

- 특구신청 : 2013. 7. 10 ~
- 주심위원 방문 설명 : 2013. 8. 20 ~ 23
- 특구 심의위원회개최 : 2013. 8. 30(금) 서초동 VR 빌딩

## 6. 검토 사항

### 가. 특구지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특구지정 계획안은 우수한 지리적여건(큰 일교차, 물의 발원지)과 거점 APC, 사과이용연구소, 사과테마파크, 딸기체험마을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국최고의 맛과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우리군의 사과·딸기를 전국 최고의 사과·딸기 주산지로 발전시켜 지역명소마케팅 및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가공분야 활성화, 유통기반구축, 명품브랜드육성을 통해 FTA에 따른 지역농업의 보호 및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사과·딸기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임

#### **나.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구 지정을 통해 거창사과·딸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1차 생산에 집중된 지역의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산업과 연계된 6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 이상기온 기후변화, FTA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3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45억원, 취업유발효과 2,301명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증가효과는 5년 평균 3.32%로 약 216,9078명의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관광수입 효과가 약 279억이 예상되며 총 2,06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다. 특구사업 계획**

- 특화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산지유통센터건립, 사과테마파크 건립, 등 기반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5년간의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소요예산임 다만 사과운영연구소운영, 딸기 해외수출 활성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홍보 등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7. 검토 의견

- 거창사과·딸기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은 지리적여건(큰 일교차, 물의 발원지 등)과 거점APC, 사과이용연구소, 사과테마파크, 딸기체험마을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 그 동안 축적된 기반시설과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사과·딸기 부가가치 즉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거창사과·딸기 산업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 공청회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사항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